

2023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공고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관세 부과와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상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관세·무역 분야에 관심있는 모든 이들에게 「관세평가」와 「품목분류」라는 새로운 연구분야를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10일

관세평가분류원장

01 참가 자격

- ▶▶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3인 이내 팀구성 가능)**

02 공모 분야

- ▶▶ 관세평가, 품목분류 2개 부문

03 연구 주제

- ▶▶ **[권고 주제]** 아래 주제 중 하나를 선택

- 관세평가 부문

1. 관세법상 **실질과세 원칙** 도입방안 연구
2. **가격의 할인(Discount)**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마련
 - 가격할인관련 일반규정 신설검토 -
3.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가격전략 및 관세 평가관점에서의 영향 연구
4.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 후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의 구분
 - 국내발생 운임 등의 입증책임과 증명방식 -
5.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의 기준 정립 및 사례연구

- 품목분류 부문

1. **HSK분류체계** 및 **식품공전 상 식품유형**에 관한 비교 연구
2. **완구류(9503)**의 품목분류 체계 연구 및 합리적 개선안 마련
3. **제8302호의 브래킷**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의 범주
4. **제2101호 커피대용물**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
5.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 세트** 등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 및 기준에 대한 연구
 - '기능(functions)'이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

- 각 주제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 5** 참조

▶▶▶ [자율 주제] 권고주제 외에 연구자가 자율적 선정

※ 연구자가 선정한 주제가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논문 심사·평가 시 권고주제를 선택한 연구논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04 논문형식 및 분량

▶▶▶ A4 용지 **25매 내외** 서술식 논문 (小논문, 연구보고서 형식도 가능)

▶▶▶ 별첨 논문 작성 요령을 참고(☞ 별첨 6 참조)하되, **자유 형식 가능**

※ A4 용지 25매 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본문 분량(별첨 또는 참고자료 제외)이 **50매를 초과**할 경우 평가점수 **5% 범위 내에서 감점**될 수 있습니다.

※ 논문 후단에 해당 **논문에 대한 요약서(2-3 page 분량)**를 필수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05 참가 신청

▶▶▶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 부득이한 경우 e-mail로도 가능)를 통해 제출 (☞ 별첨 1 참조)

▶▶▶ 참가 신청 기간 : **2023.4.10(월) - 5.8(월)**

※ 참가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 접수(최종 논문 제출)가 가능**하나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 제공, 자문 등 논문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신청 기간 이내에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관세평가)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오창진 관세행정관
☎ 042-714-7511 / tristan21@korea.kr
- (품목분류)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문승용 관세행정관
☎ 042-714-7534, 7528 / tart75@korea.kr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손민기 차장, 정성윤 부연구위원
☎ 02-3416-5196, 5187 /smk0110@kctdi.or.kr

06 논문 제출

- ▶▶ 제출 기한 : 공고일부터 **9.30.(토)** 까지
- ▶▶ 제출처와 제출 방법은 참가신청과 동일

07 검증 및 심사

- ▶▶ 검증
 - 표절, 도용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검증 실시
 -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유사율 15% 초과 시 세부 조사 후 적합여부 판정
 - 연구 부정행위 확인 시 응모 무효 처리
- ▶▶ 심사
 - [심사기준] ① 주제의 창의성·적절성 ② 내용의 논리성·일관성 ③ 방법의 타당성·적절성 ④ 결과의 활용성·기여도
 - [심사위원] 관세청 공무원, 교수, 전문직 등 관련 전문가 6인 내외
 - [심사방법] 블라인드 심사방식으로 서면 평가
 - (가점) 권고주제 선택, 학생(석사과정 이하, 대표연구자 기준)에 대해 평가점수 5% 범위 내 적용 가능
 - (감점) 논문 분량 50매 초과 시 5% 범위 내 적용 가능

08 시상

- ▶▶ 관세평가, 품목분류 **부문별** 시상
 - 대 상 (1)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500만원
 - 최우수상 (2)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우 수 상 (3)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150만원
 - 장 려 상 (5) : 관세평가분류원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 ※ 연구논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세부 시상내역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관세청 공무원** 참가자의 경우 **상금**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수상작 발표 : **2023.11월**,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

※ **지연 등 변경 시 공모전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우수작 발표회 : 추후 공지(별도 통보 예정)

09 기타 사항

▶▶ 연구윤리서약서(☞ **별첨 2**)와 연구논문 활용 동의서(☞ **별첨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첨 4**)를 제출하여야 함

※ 서약서 및 동의서는 참가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동의 여부 선택)

▶▶ 제출된 연구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자**에게 있고, 관세청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출된 연구 논문을 배포 및 활용할 수 있음

▶▶ 기 발표 또는 발표된 논문과 유사한 연구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본 공모전에 제출된 연구논문이 다른 기관 등에 **이미** 당선 또는 게재된 경우 입상이 취소됨

▶▶ 논문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상이 취소됨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준용

▶▶ 본 공모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연구논문은 결과 발표 후 **학회지 등에 게재**하여 **공인**받을 것을 **권장**함(다만, 학위논문으로 제출 및 활용할 수 없음)

별첨 1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 참가신청서

<대표자>

■ 성명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관세대학교 000학과 부교수		
■ 부문	관세평가/ 품목분류 택 1	■ 연락처	010-1234-5673	■ 이메일	000000@ customs.go.kr
■ 주소	대전시 서구 청사로 281 mmm아파트 000동 0000동				
■ 논문주제	수입 후 가격 변경에 대한 합리적 관세평가 처리 방안				
■ 연구방안	연구개요 작성				

<팀원>

■ 성명 ①	김길동	■ 소속	관세컨설팅(주)	■ 직위	컨설팅본부장
■ 전공		■ 연락처		■ 이메일	
■ 주소					
■ 성명 ②	박길동	■ 소속	관세법인 대전	■ 직위	관세사
■ 전공		■ 연락처		■ 이메일	
■ 주소					

연구 윤리 서약서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아래 본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2023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에 참가하면서, 표절, 위조, 변조, 사전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상작으로 결정된 것이 확인될 경우, 위원에서 정한 방침에 의거하여 수상자격 박탈, 상금반환 등 수상 취소 조치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3. .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서명)

연구논문 활용 동의서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아래 본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2023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에 참가하면서, 제출된 논문이 관세청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 편집 및 제도에 반영되는 것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2023. .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아래 본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에 참가하면서, 참가신청서 상의 개인정보를 상기 공모전 운영을 위하여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정보의 수집: 참가자의 성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이메일, 전공(학생의 경우), 주소 등
- * 정보의 활용: 수상자 발표(공고), 보도자료 배포, 우수평석집 책자 발간 등

2023. .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서명)

연구논문 권고주제 세부내용

[관세평가 부문]

주제 1 관세법 상 실질과세원칙 도입방안 연구

【연구배경】

- **실질과세원칙**이란 조세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부담의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으로
 - 통상적이지 않은 법적 형식을 선택하여 조세부담을 경감 또는 면제받는 조세회피행위(Tax avoidance)를 규제하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됨
-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현행법 규정은 크게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일반규정(또는 선언적 규정)과 구체적 적용을 위한 개별규정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우리나라 조세법 중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일반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임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
-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거래내용 ‘계산’에 관한 실질주의]
-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경제적 실질에 따른 거래의 재구성]

- ‘경제적 실질’에 따라 납세자가 택한 법적 형식이나 외관을 부인하고자 할 때는 ‘**주관적 조세회피 목적**’과 ‘**객관적 행위형식**(우회 또는 다단계거래)’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임
- 관세법은 국세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관세법에는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다수의 관세법 관련 판례에서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이 관세법상 적용됨을 확인함
 - ① 관세법에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됨을 확인(대법원 2002두8442판결, 2003.4.11.)

-
- ② 법적 실질(소유권)에 따른 화주(‘납세의무자’)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객관적 행위형식요건(우회·다단계거래)과 주관적 조세회피목적 요건 충족 시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의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대법원 2014두8636판결 참조, 2014.11.27.)
 - ③ 다국적기업의 국제마케팅비 관련 사건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계산의 원칙’을 명문으로 적용(대법원2015두52098 판결, 2016.8.30.)
 - ④ 구매자와 판매대리인에 관한 판단 시 실질과세원칙 인용(대법원 2015두49320판결, 2017.4.7.)
 - 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조세회피의 목적은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인 경우’도 인정(대법원 2022두45470판결, 2022.5.10.)
- 관세법에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됨은 확인되었으나,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어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배 및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 침해 소지가 있고
 -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관세법에 그대로 적용 시 국제거래와 관련된 관세의 특성상 ‘주관적 조세회피 목적’ 등 입증에 매우 어려움
 - 따라서 관세분야에서도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연구 및 **관세법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명문 규정 신설* 필요**
 - *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와 국가 간 과세조정을 다루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국세기본법과 별도로 제3조(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등을 통하여 납세의무자의 입증책임 부담 등 국제거래에 부합하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요건 규정

【연구방향】

-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 규정 신설 및 적용 요건 및 효력, 방법 등 연구**(국세기본법 제14조에 대한 해석 및 관세법에 적합한 입법화 방안 포함)
 - **관세법상 조세회피행위 규제에 대한 일반규정과 특별규정 신설 방안**
 - **관세평가 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연구**(관세법 제30조 및 제35조의 적용·해석)
 - 실제지급가격, 가산요소, 거래가격 배제사유, 제2방법 내지 제6방법과 연계 및 적용
 - 경제적 실질에 따른 거래의 재구성과 실질과세 원칙의 연계
 -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검토 및 관세법상 적용 방안 (내국세법 규정의 한계와 관세법 개정 유의사항 도출)
 -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관한 해외 주요국 규정 및 판결·사례연구**
-

【연구배경】

- 과거 브뤼셀 평가협약 체제 하에서는 “공개시장에서 어떠한 구매자에게라도 제공되는 가격 할인”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할인을 인정하였고 제한된 구매자에 대한 할인은 가산조정 하였으나 현행 WTO관세평가협정에서는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 아닌 한 거래가격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됨
- WTO관세평가협정 본문 역시 가격할인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지만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지침사항 등을 통해 가격할인에 대한 실무적인 평가방안을 가이드하고 있음

구 분	인정 여부	근거 규정
선불할인	인정	브뤼셀 평가정의와 GATT 평가협정의 비교 제39항
현금할인	인정	권고의견 5.1~5.3
수량할인	인정	권고의견 15.1
종전 거래와 관련된 채권의 할인	불인정	권고의견 8.1

- WTO 평가협정 체제 하에서의 가격할인은 BDV 대비 할인의 개념은 물론 그 인정범위도 넓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할인이 주어진 사유 자체가 구매자로 하여금 별도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 가격할인이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경우, 수입 후 누적수량에 따라 소급적으로 적용되는 할인(권고의견 15.1, 예시3, 예시4), 종전 거래와 관련된 채권할인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가격할인이 인정되고 있음**
- 이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관세법은 가격할인과 관련된 규정이 부재하며 특히 WCO의 지침사항만으로는 복잡하고 체계화된 기업들의 거래구조에 적용하기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실무적으로 할인의 종류는 다종다양하여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간 이슈 발생

【사례제시】

- **(거래내용)** 판매자와 독점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기준수량 이상 구매하면 구입수량의 일정비율을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약정한 거래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물품(Free Sample Supply, 이하 쟁점물품)의 관세평가 상 처리와 관련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간 이슈 발생

《 무료샘플 공급(Free Sample Supply) ('12.6.4차 갱신계약) 》

구매수량	판매자가 공급할 무료 샘플
연간 1,688개 미만	무료샘플을 제외한 구매물량의 11%
연간 1,688개 이상 2,300개 미만	무료샘플을 제외한 구매물량의 14%
연간 2,300개 이상	무료샘플을 제외한 구매물량의 15.5%
연간 3,000개 이상	무료샘플을 제외한 구매물량의 17%

* 무료 샘플 물량은 다음 연도 첫 3개월 이내 제공

- **(쟁점)** 연간 구매실적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는 물품이 가격할인(수량할인)을 인정받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드시 추가로 공급된다는 것이 예정”, “실질적으로 단위당 거래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무료샘플이라는 명목으로 공급되었고, 원고가 이를 수입할 당시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대가없이 공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8두 47714 판결, '22.11.17 선고)

【사례검토 및 제언】

-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관세법 시행령 제17조)
 - 다만, 경우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받는 물품이 유상구매 물품과 동일주문에 의해 거래된 하나의 거래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거래가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18년 관세평가협의회 결정18-01-02)
- 그러나, 이 사건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무상으로 추가 제공되는 물품도 **판매자에게 지급한 거래 가격에 그 대가가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협정의 취지 및 현행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이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i) 연간 구매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하여 추가 제공되는 **무상물품은 유상물품과 별도로 수입되며, 그 수입 시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음
 - ii) 이 사건의 경우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물량이 반드시 공급되는 것이 유상물품의 거래시점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연간 구매목표 달성이라는 장래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임**
 - iii) 연간 구매목표를 달성해 결과적으로 수입단가가 인하되는 수량할인과 유사해 보이나 이는 WCO

관고의견 15.1 예시4와 같이 **소급해 할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관세평가 상 수량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iv) **관세채권의 확정**은 가격조정약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수입신고시점에는 이루어져야 함**(연간 구매수량의 정산 시까지 관세채권의 확정을 지연시키는 결과 초래)

※ 우리 「관세법」에는 할인을 인정하는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관세당국(CBP)은 할인 또는 가격조정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의 일부로 고려되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미국관세청 Ruling HQ H215556**, 2012.7.17.]

① 해당 할인이거나 가격조정은 수입 이전에 합의되어야 함

② 수입자는 할인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서면증거 자료를 CBP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할인이 수입이전에 합의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③ 할인 또는 가격조정은 무조건적이어야 하며, 만약 조건부라면 수입 전에 모든 조건이 충족(성취)되어야 함

• 상거래 관행 상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할인에 대한 사례수집 및 합리적인 관세평가 방안 연구와 함께 미국의 CBP Ruling과 같이 우리 관세법령에도 할인에 대한 일반 규정 신설 검토 필요

【연구방향】

•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무상·유상물품의 범위와 판단기준 및 관세평가상 처리

* 무상 AS용 물품, 대체수입물품(spare parts), 하자보증용 물품 등

• 가격할인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법 상의 근거규정 필요성 검토 및 예시규정 제시(‘소급할인’을 중심으로)

• 가격할인에 대한 주요국가 입법사례·유권해석 사례 수집 및 분석(해외 사례 포함)

* 대법원 2018두47714(2022.11.17.), 수원지법 2021구합 63205(2022. 4. 28.) 참조

• 가격할인의 정의 및 그 적용에 대한 판단 기준 연구

•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지침사항을 벗어나는 다양한 경우의 가격할인에 대한 예시사례 제시 및 그에 대한 평가방안에 대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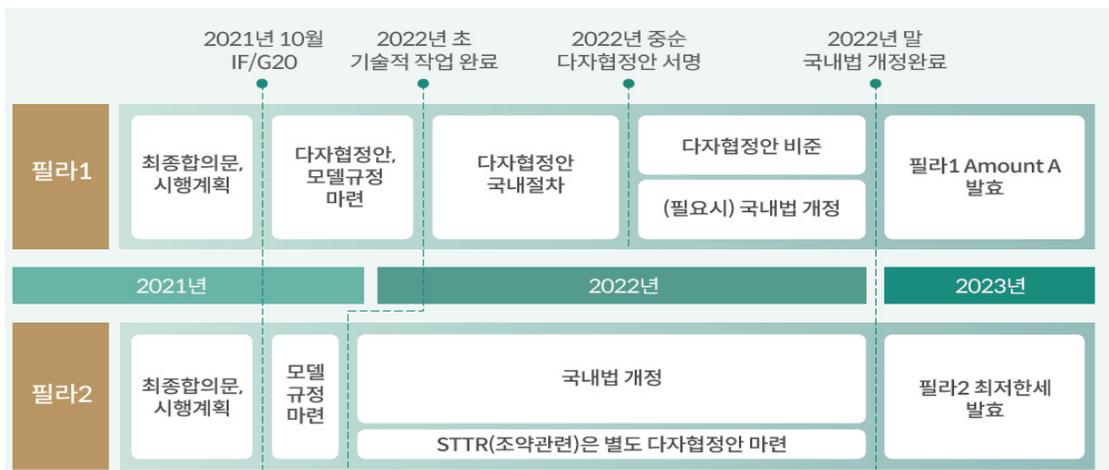
【연구배경】

- 최근 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합의체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종래의 물리적 실체에 기반한 국가간 과세원칙과 다른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과세권 배분(디지털세*) 방안 마련**

* (배분) **필라1** : 매출액 200억유로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 중 통상 이익을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25%의 과세권을 각 시장 소재국에 배분, **필라2** :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적용

(대상) IT기업(디지털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년간 논의를 거쳐 디지털 기술기반 제조기업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

〈디지털세 도입 일정〉



-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 정책을 통해 수입가격을 고가 또는 저가로 조정하여 소득발생국의 영업이익을 조정할 가능성 상존

※ [국내 다국적기업] 약 7천개, 국내 수입비중 35%, 세액비중 44%

【연구방향】

- 디지털세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다국적기업의 해외 생산과 판매의 지역별·국가별 수정 배분/전환 전략에 따른 관세 관점에서의 거래구조 및 영향
 - 이전가격 변경에 따른 국세와 관세(평가) 관점의 통합적 연구·대응
 - 비즈니스별 고가 유인 이전가격 정책의 검증 및 대응 방안
 - 비즈니스별 저가 유인 이전가격 정책의 검증 및 대응 방안

주제 4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 후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의 구분

- 국내발생 운임 등의 입증책임과 증명방식 -

【연구배경】

-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에서는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수입항 도착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의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실제지급가격에 대한 주해 제3항에서도 동 비용이 실제지급가격으로부터 **구분되는 경우(distinguished)**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무상 이러한 공제요소를 실제지급가격에서 뺄 수 있는 요건인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의 의미 및 입증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 * WCO 사례연구 13.2 “상업송장은 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 “The responsibility rests with the importer to distinguish any such costs from the PAPP” (WCO 관세평가교육훈련용 모듈 중·고급용 제1조 주해:3항-법적공제), EU COMPENDIUM 2019 예해5 참조
 - 특히, 전세계 물류수송 방식 및 계약형태가 다양해져 **공제 비용에 대한 입증 책임 및 구매자(수입자)의 증명방식에 따른 이슈 발생 증가**
- 다양한 비즈니스 형태*와 무역거래의 특성에 따라 수입 후 국내발생 운임 등의 구분 기준과 공제방법 (국내운임 기준, 입증서류)에 대한 연구 필요
 - * 수정 인코텀즈 계약형식, 운송비용 총액으로 지급되는 특송수입물품에 대한 문제 등

【사례검토】

① 관세심사 처분 사례

[사실관계]

- 수입자는 해외 수출자로부터 육류 등을 수입하면서 결제인도조건을 CPT, CFR 등 C조건으로 국내창고 까지 운송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고, 이에 따라 국제해상운임과 수입항 도착후 국내 내륙운송비 등을 수출자가 부담
- 수입자는 선사가 발행한 B/L 또는 운송업체 확인서 상의 국내 THC 비용과 Inland Charge를 공제 신고
- 세관심사 시 공제요소의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 증빙자료(국내운송업체의 계약서, 운임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일부 확인 결과, **실제 발생 비용 대비 과다 공제 확인**

[주요쟁점]

- 수입항 도착 후 운임 등에 대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인정 범위 및 수출자가 부담하는 운임에 대하여 수입자의 확인 의무(입증책임) 범위
 - 수입자가 국내 보세운송업자에게 실제 지불된 운임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하는지

[처분 결과]

- 국내발생 운임에 대한 증빙자료 유무(내국운송료가 기재되어있는 B/L)에 따라 구분하여 비과세, 전액과세, 실제 발생금액과 기존 공제금액의 차액에 대한 과세 처분

② 질의 회신 사례

• 축산물 수입 국내운임 공제 관련 분류원 질의회신 ('14.6.13.)

관세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수입항 도착 후 내국운송비용이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도록 하고 있으며, 명백히 구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실질을 파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필요

- 운항선사 등 당해 사업자가 발행한 B/L, 운임명세서 등
- 또는 국내운송을 담당한 운송회사(보세운송업체 등)에서 제출한 운항선사와의 운송계약서, 운임청구서(운송내역서), 입금내역 확인서(입금표) 등

• 수입 후 설치비용 등 공제요소 인정여부 분류원 질의 회신 ('13.9.23.)

공제요소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능한 바, 질의한 “송품장(Invoice)에만 구분·표시된 수입 이후 설치비용 등을 과세가격의 공제요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참조판례

- 수입 후 설치비용 등 공제요소 해당 여부를 ‘계약단계의 관련 서류 및 금액의 구체적 확정’과 같은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해당 수입물품의 성격과 이에 따른 수입 후 설치비용의 발생가능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한다고 판시 [부산지법 2014구합 20866, 2014.10.16. 선고]

【연구방향】

- 공제 가능 운송비와 운송 관련 비용 종류
-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 당사자가 수정 인코텀즈 계약형식(예, CFR+국내보세창고 형식)에 따라 운송료를 책정하고 있는 경우 운송료의 공제방법에 따라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 이슈 발생 가능 여부

-
- 공제 운송료의 입증책임과 입증 서류
 - 운송관련 비용의 입증책임과 입증 서류
 - 외국계 특송업체가 국내운송료를 포함한 월간/연간 단위의 운송비용 총액으로 국내 당사자에게 운임을 청구하는 경우 공제 가능 여부
 - 우리나라 운송비 공제 관련 유권해석, 쟁송 이력 및 시사점
 - 타 관세당국의 운송 및 운송 관련 비용의 관세평가 처리방안
-

【연구배경】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제31조부터 제35조(제2~6방법, 대체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제2~5방법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제35조(제6방법)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음
- **(제6방법 적용의 원칙)** 합리적 기준이란 WTO관세평가협정과 GATT 제7조의 원칙과 일반규정에 부합하는 합리적 방법으로서,
 - 제1~5방법을 순차적으로 신축 적용하고,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을 최대한 활용하며, 수입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사용하되,
 - ‘자의적·가공적 가격’ 등 금지된 가격의 사용을 배제하는 한도에서 세관당국과 수입자 간 협의를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 우리 관세법령에는 협정에 규정된 ‘수입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에 기초’, ‘수입자와 세관의 협의 과정’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제6방법 적용의 현재)**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실무상 제2~3방법의 요건을 신축 적용하는 일부 사례와 제4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외에 대부분의 제6방법은 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고 함) 제5장에서 규정하는 특수물품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 고시의 특수물품 평가규정은 대부분 예시 규정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무상 동 고시 규정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음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의 합리적 평가방안)** 특수관계에 의해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경우 대부분 제4방법(또는 제6-4방법)을 적용해오던 관행이 있으나,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 및 거래관계의 특징으로 인해 동종동질(제2방법), 유사물품(제3방법) 뿐 아니라 동종동류물품(제4방법)을 선정하기 어렵고, 해외 수출자의 원가 자료를 입수 또는 검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제6방법에 따른 평가기법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함
- **(특수물품, 신종거래 등의 합리적 평가방안)** 여행자 휴대품, 중고물품 등 특수물품은 고시 제5장에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모든 물품의 거래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예 : 리퍼 물품 등)
 - 또한, 무상수탁 가공 원재료, 국내 유지보수 서비스용 무상물품 등 용역과 물품이 통합된 거래(용역수반 거래), IT 기술 발전 등으로 완전 판매되지 않는 Pay per Use 방식 거래 등 새롭게 등장하는

거래형태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한 합리적 평가방안 연구가 필요

* Pay per Use 방식 거래 관련 조심 2016관189(17.7.27.) 등, 재생물품(Refurb) 관련 대법원 2018두56794(부산고법 2017누24196) 판결 등 참조

- 아울러, 제6방법은 최종적인 평가방법(Fall-back method)으로 수입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수입자와의 협의 과정(process of consultation)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정답(正答)이 아닌 최선의 해답(解答)을 찾는 방법]을 찾아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임에도,
 -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관세관청에 과도한 입증책임 부담 의무를 지우는 법원의 태도로 인해 합리적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 존재
 - * 관세조사 당시 제출된 자료에 근거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음에도, 불복·소송 과정에서 추후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보다 합리적 방법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을 이유로 당초 과세가격 결정이 위법하다 할 수 있는지의 문제

【연구방향】

- **제6방법 적용에 대한 국내외 사례 연구**
 - 국내 관세조사사례, 불복·쟁송사례 및 해외 제6방법 적용 사례 연구
 - **특수관계 영향으로 제1방법 배제된 이전가격에 대한 합리적 평가방안 사례 연구**
 - 특히, 제6-1방법 평가방안 연구 (특수관계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 근거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이전 가격을 평가하는 사례 연구)
 - **특수물품 평가 규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새롭게 등장하는 거래형태에 있어 합리적 평가방법(제6방법) 사례 연구**
 - **제6방법 적용에 있어 납세자의 협력 및 과세관청의 과도한 입증책임 완화 방안**
 - **제2방법~제5방법 적용 불가(배제) 사유 유형화 및 관련 근거 규정 필요성 검토**
-

[품목분류 부문]

주제 1 HSK분류체계 및 식품공전 상 식품유형에 관한 비교 연구

【연구배경】

- 최근 식품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위원회 및 협의회 결정시 식품공전상 식품유형이 결정사유에 빈번히 인용되고 있음

2023년 제1회 품목분류위원회: 건조한 김치(식품유형 : 김치) 제2005.99-1000호(김치) 결정
2022년 제3회 품목분류위원회: 고추류를 주성분으로 한 소스(식품유형: 소스) 제2103.90-9090호 결정
2022년 제2회 품목분류협의회: 삶은 대두를 바실루스속균으로 발효(식품유형 : 청국장) 제2008.19-9000호 결정

- 「식품유형」은 제품의 원료·성상·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사한 특성의 식품끼리 묶은 것이므로,
 - 관세율표상 식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품목분류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음
- HS협약에 따라 HS 6단위 소호의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이를 세분하여 10자리 코드인 HSK를 사용하고 있으며,
 - 수입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하도록 되어 있는 등
 - HSK 10단위 분류체계는 국내 식품법상 식품분류체계인 식품유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따라서 식품공전상 식품유형을 고려한 HSK분류체계 검토 필요

【연구방향】

- 식품류의 HSK분류체계 및 식품유형 검토 (예시)
- 버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HSK 제2106.90-902호 분류

HSK	품명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90	기타
90	기타

HSK	품명
2	버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22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70 이하인 것
23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
90	기타

- 관세율표(제4류 주 제3호)에서 '버터'는 '유지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5 이하이고, 무지 유(無脂乳) 고형분의 최대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하이며, 최대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6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여 분류
- 식품공전상 '버터류'는 '원유, 우유류 등에서 유지방분을 분리한 것이나 발효시킨 것을 그대로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교반, 연압 등 가공한 것'으로 정의

〈식품유형〉

(1) 버터 : 원유, 우유류 등에서 유지방분을 분리한 것 또는 발효시킨 것을 교반하여 연압한 것(식염이나 식용색소를 가한 것 포함)

(2) 가공버터 : 버터의 제조·가공 중 또는 제조·가공이 완료된 버터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하여 교반, 연압 등 가공한 것

⇒ [문제점] 버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HSK 제2106.90-902호)을 분류함에 있어, 관세율표상 '버터'의 규정 적용시, 식품공전상 정의된 '버터(유지방분을 분리한 것 등)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가공버터)이 HSK 제2106.90-9090호에 분류될 수 있음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분류되는 '가공버터'가 HSK 제2106.90-902호 또는 제2106.90-9090호에 달리 분류되는 등 통계 왜곡 우려
- HSK 분류에 있어 '버터'의 범위를 국내 식품법상 식품공전의 정의를 반영하여 넓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식품공전상 식품유형을 고려한 HSK분류체계상 개선 필요사항 발굴 및 연구

【연구배경】

- '07 HS 4차 개정*시 완구의 품목분류 체계는 단순·통합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개정 전 품목분류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여전히 세분화·복잡한 HSK 체계를 갖추고 있고, HSK 별로 관세율·환급액 등이 달라 품목분류의 어려움 상존

* 주요 개정내용

- 제95류 주4 신설(완구와 기타 물품이 결합된 경우의 품목분류) 및 제9503.70 소호 해설 삭제('세트'와 '아웃피트'의 품목분류 규정)
- 완구의 품목번호 통합 // 3개 호(제9501호·제9502호·제9503호) ⇒ 1개 호(제9503호)

- 최근 복잡 다양한 완구류의 등장과 완구류의 복잡한 품목분류 체계로 인해 세관장 확인 대상, 환급 및 세율 차가 발생하여 분쟁이 예상됨

00 company : 완구 vs 게임기

00사 : 조립식 완구 vs 기타 완구

000사 : 미완성 완구를 완성품 완구로 간주할 수 있는 완성품 완구의 본질적 특징 판단 기준

- 따라서 완구류에 대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분류체계 검토 필요

【연구방향】

- '07 HS 개정 사유, 다른 법령에서의 완구 분류기준 등을 연구
- 타국의 완구 분류체계 및 국내외 완구류 품목분류 기준·사례 등을 비교 연구
⇒ 저출산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쉽고 합리적인 HSK 분류체계 개선방안* 마련
* 세번별 요건사항, 세율차, 환급액을 고려한 합리적 통합 방안의 비교표 제시 등
- 완구류와 빈번 경합되는 품목을 발굴하여 기준안 마련
- (예) 모터 완구 vs 세트, 전자 완구 vs 게임기, 풍선 vs 축제용품

【연구배경】

- 기기나 제품 등을 다양한 곳에 부착하거나 지지·고정하기 위한 물품들이 제7326호(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와 제8302호에 각각 나뉘어져 분류되고 있음
-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3류의 주 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 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302호로 우선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8302호가 아닌 제7326호로의 분류논리와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품목분류 업무에 애로사항 발생
- 또한 장착구·부착구와 달리 특정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브래킷의 경우, 전자 기기나 제품의 내부에 장착되어 부분품적 역할을 하는 물품까지 제8302호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제8302호의 품목분류 체계〉

제8302호의 용어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er),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8302.30 -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302.41 - 건물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302.42 - 가구용에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302.49 - 기타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302.50 -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 관세율표에서는 제8302호의 장착구, 부착구, 브래킷에 대한 정의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제품이나 기기 등을 서로 이어주거나 지지·고정하기 위해 특정한 곳에 장착하거나 부착하는 물품들이 이 호로 분류되며, 장착구·부착구의 경우 특정용도가 정해져 있으나 브래킷의 경우 용도 및 부착되는 곳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음.

【연구방향】

- 제8302호로 분류되는 장착구·부착구, 브래킷과 제7326호로 분류되는 장착구·부착구, 브래킷의 분류기준
- 전자 제품의 내부에 장착되는 브래킷까지 제8302호로 분류될 수 있는지의 여부

【참고자료】

fittings

- ① (기계공학)이음쇠 (민중판 이공학 표준영어사전)
- ② 부속품 (민중판 이공학 표준영어사전)
- ③ (장비가구의 작은) 부품 (옥스퍼드 영한사전)

mountings

- ① 무언가에 대한 받침, 설정, 지원 (옥스퍼드 영한사전)
- ② 무언가를 장착하는 동작 (옥스퍼드 영한사전)

브래킷(BRACKET)

- (처마·선반 등의) 받침대 (Daum 영한사전)
 - (벽면에서 돌출한 가스등·전등을 받치는) 브래킷 (Daum 영한사전)
 - a peice of metal, wood, or plastic, usually L-shaped, that is fastened to a wall and used to support something such as a shelf
일반적으로 L자 모양의 금속, 나무 또는 플라스틱의 한 부분(조각, 부품)으로 벽에 고정되어 선반과 같은 것을 지지하는데 사용(Cambridge Dictionary 출처)
 - Brackets are pieces of metal, wood, or plastic that are fastened to a wall in order to support something such as a shelf
브라켓은 선반과 같이 무엇인가 지지하기 위해 벽에 고정되는 사용하는 철제, 나무, 플라스틱의 부분(조각, 부품)을 말한다.(Collins Dictionary 출처)
 - a fixture (as for holding a lamp) projecting from a wall or column
(램프를 고정하는 것과 같이) 벽이나 기둥으로 돌출된 고정물(Merriam-Webster dictionary 출처)
-

주제 4 제2101호 커피대용물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 **(배경)** 관세율표 제2101호의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필요
- **(유래)** 커피 대용물은 전쟁 등으로 인해 커피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커피 맛에 길들여진 군인과 민간인이 커피를 대신할 차를 찾는 것에서 유래
- **(전망)** 커피 수요량이 커짐에 따라 커피 농장을 만들기 위해 산림을 벌채해야 하는 문제와 찌꺼기의 환경문제 등으로 커피잎에서 추출한 세포배양 커피나 합성방식의 분자커피 등의 대체커피가 개발되고 있어 커피대용물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확한 판단기준이 필요
- 커피 대용물 관련 규정
 - 관세율표

2101	30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Roasted chicory and other roasted coffee substitutes, and extracts, essences and concentrates thereof
2101	30	1000	보리의 것	Of barley
2101	30	9000	기타	Other

- 관세율표 해설서

(5) 볶은 치커리(roasted chicory)·그 밖의 커피 대용물과 그 추출물·에센스·농축물.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이나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이나 커피에 첨가하도록 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 때때로 이들 물품은 기본 재료의 명칭을 앞에 붙여 “커피(coffee)”로 칭한다(예: 보리“커피”·맥아“커피”나 도토리“커피”).

볶은 치커리는 제1212호의 치커리 뿌리[치코리움 인티부스 변종 사티붐(Cichorium intybus var. sativum)]를 **볶아서 얻으며 흑갈색이고 쓴 향미가 있다.**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은 사탕무·당근·무화과·곡류[특히 보리·밀·호밀]·쪄낸 완두콩·루핀의 씨(lupine seed)·식용 도토리·대두·대추야자씨·아몬드·민들레 뿌리와 밤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을 포함한다. 또한 **명백히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볶은 맥아(roasted malt)도 이 호에 포함한다.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제22호 볶은 곡물(관세율표의 볶은 곡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

-
- 1) 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긴 것
 - 2) X-선 회절분석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 등 침출차로 사용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품목번호 제2101호에 분류한다.

【연구방향】

- 해설서에 커피대용물로 예시하고 있는 품목들의 맛과 향 등 특성 연구
 - ‘볶은’의 정도와 커피대용물로 사용 가능한 품목에 관한 연구
 - ‘명백히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에 적용 가능한 형태에 관한 연구
-

주제 5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 세트 등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 및 기준에 대한 연구

- ‘기능(functions)’이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

【연구배경】

-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mixtures),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composite goods)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하 “소매용 세트 등”)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 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통칙 제3호 나목 해설서에서는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 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함
-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면, 성질, 용적, 수량, 중량, 가격, 구성재료의 비중을 어떻게 얼마큼 비중을 두고 판단할 것인지, 물품의 특성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문구 의미가 모호함

【연구방향】

-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이하 ‘소매용 세트 등’)로 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한 분류기준 고찰
- 소매용 세트 등의 품목분류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 수집을 통한 유사분류 기준 및 결론 도출
- 소매용 세트 등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인 성질, 용적, 수량, 중량, 가격, 구성물질의 역할 외에 추가 가능 요소(기능(function), 소비자의 구매 목적 등)의 제시를 통한 합리적인 방안 제시

연구논문 작성 요령 (참조용)

I. 원고 작성 일반요령

1. 원고는 A4용지에 '아래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구분	위/아래	오른쪽/왼쪽	머리말/꼬리말	제본
여백	각 20mm	각 30mm	각 8.5mm	0mm

2. 원고는 표지, 목차, 본문, 각주, 표 및 그림, 참고문헌으로 구성된다.

- 1) 표지는 원고의 제목(영문 표기), 필자의 이름(영문·한자 표기), 소속, 직책, 연락처(주소·전화 번호·메일주소) 등을 기재한다.
- 2) 목차는 I, 1, 1), (1)의 순으로 표기한다.

※ 제목 및 표, 그림 등의 번호전개

구분	전개번호	크기	구분	전개번호	전개번호 위치
장	I	16	표	<표 1>	표 제목 앞, 표 위 가운데
절	1	13	그림	[그림 1]	그림 제목 앞, 그림 위 가운데
항	1)	12	수식	(1)	수식 뒤(우측 끝)
목	(1)	12			

3)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하며, 글꼴 신명조·글자크기 12포인트·줄간격 160%로 작성한다.

※ 글자 크기

구분	크기	비고(표기)	구분	크기	비고(표기)
표지의 제목	16	진하게	부록제목	12	<부록 1>
본문의 소제목	13		수식	12	(1)
본문 내용	12		소속	10	
성명	12		각주	10	1)
요약	12	<요약>	표 속의 글	11	
표제목	12	<표 1>	그림 속의 글	11	
그림제목	12	<그림 1>	부록 속의 글	11	

4)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필요한 경우에 본문 면의 하단에 아래의 출전표시요령, 인터넷 자료인용, 참고문헌 작성 요령 등을 준용하여 간결하게 표시하며, 글꼴 중고딕·글자크기 10포인트·줄간격 130으로 한다.

5)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혹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하고,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 표 그리기 요령

구 분	선 모양	비 고	구 분	선 모양	비 고
맨 위/맨 아래	————	진한선	내 부	보통선 또는 점선
왼 쪽/오른 쪽		투명선	표두 아래쪽	====	이중 실선

6) 참고 문헌은 새로운 면에 ‘참고 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하며, 참고 문헌의 작성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 요령’을 참고한다.

3. 공동으로 집필한 원고는 교신저자를 표기할 수 있다.
4.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5.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6.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7. 외국 지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고,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8.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 번역 명과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 명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 : 유럽 통화 제도(EMS : European Monetary System)
9. 본문과 각주에서 출전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을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출전 표시(source reference)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전 표시 요령’을 참조한다.

II. 출전 표시 요령

1. 출전은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서명, 저자명, 출판 연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

2. 구체적인 예

- 1) 저자 명이 글(본문과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 연도를 표시한다.
예 : 홍길동(1996)
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 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 무어 (Moore 1966)
- 2) 저자 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는 성명과 출판 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 (홍길동 1966)
- 3) 면수는 출판 연도 다음에 쉼표를 하고 숫자로 표기한다.
예 : (Evans 1979, 56)
- 4)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라는 말을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예 : (한배호 외 1991, 35-36)
- 5) 한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예 : (Cumings 1981, 72; 허생 1990, 35; 홍길동 1990, 18)
- 6) 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명, 발행 年/月/日(월간지의 경우 발행 年/月),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 (XX일보 93/04/08, 5)
- 7) 간행 예정인 원고는 ‘未刊’이나 ‘forthcoming’을 사용한다. 미간행 원고는 집필 연도를 표시한다. 연도가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 그 자리에 ‘n.d.’을 쓴다.
예 : Tilly(forthcoming); ...홍길동(미간); ...Jones(n.d.)
- 8)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 (XXX연구원 1992)

III. 인터넷 자료 인용

1. 제작자, 제작 연도, 주제명,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예 : 홍길동.1996. “한국의통상정책.”<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 (검색일 : 1998. 10. 20)
2. 분량이 많아 인용 부분이 페이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른쪽 바의 위치로 표시한다(예를 들어 (1/10 Bar)의 뜻은 인터넷 전체 자료의 십분의 일에 해당한다).
예 : 홍길동.1996. “한국의통일정책.”<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검색일 : 1998. 10. 20). (1/10 Bar)

IV.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순으로(이 부분을 삭제함) 배열한다.
예 : 홍길동·장길산. 1996. 『조선 의적사 연구』. 서울: 개벽사.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64.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증보판. 東京: 未來社. 린위진 (林昱君).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研究』. 臺北: 中華經濟研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보고서·간행물·서적 등인 경우는 꺾쇠(「 」)로 표시한다.
 - 2) 페이지는 숫자만 표기한다.
5. 저자표기
 - 1) 저자 1 인인 경우
예 : 장서방. 1993. 『변화하는 유권자 : 14대 총선의 분석』. 서울 : 믿음사. Tillich, Paul. 1951-63. Systematic Theology. 3 vol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 저자 2인 이상인 경우 :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 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예 : 홍길동·허생·홍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 XX연구원. 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돌석 외. 1992. 『공공 선택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선택사.
6. 학위 논문 표기
홍길동. 1992. “조선 후기 민란의 도덕 경제.”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7. 편집된 책 속의 글 표기.

1)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예 : 장노자. 1991.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김서방·연놀부·이어도 편, 『국가 이론의 재조명』, 231-263. 서울 : 호박사.

2)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예 : 관중. 1992.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 : 몇 가지 이론적 문제.” 『조직자본주의의 정치』, 261-306. 서울 : 집현연구소.

8.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예 : Bell, Daniel 저·홍길동 역. 『후기산업사회의 도래』. 서울 : 개벽사

(작성양식예시)

다국적 기업의 사후보상 조정에 대한 과세범위 연구
Study on the scope of assessment to Post Compensation
Adjust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

< 연구자 >

홍길동(洪吉童), 관세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010-1234-5678, aaaa@customs.go.kr

김길동(金吉童), 관세컨설팅(주), 컨설팅본부장
대전시 서구 청사로 281
010-5678-1234, bbbbbb@customs.go.kr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II. 선행 연구 검토	4
1. 관세평가 제도의 도입	5
1) GATT	6
2) WCO	7
참고문헌	8
요약	9

※ 해당 논문에 대한 요약서(2-3 page 분량) 필수 작성 · 제출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오늘날 어떤 나라도 국제무역(國際貿易) 없이 자급자족만으로 필요한 재화를 충족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인류는 국가 간 무역을 통해서 국부(Wealth)를 창출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모든 나라에서 무역이 주요한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등을 거래하는 것으로 그 대상인 자본, 상품, 서비스 등의 상거래 행위를 말한다. 그 중 상품을 대상으로 한 무역을 상품무역이나 유형무역으로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상품무역은 형태가 있는 재화를 대상으로 한 거래이기 때문에 외국물품이 국내로 들어오거나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나가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는 상품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조직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관세청(關稅廳)과 세관(稅關)이라는 조직을 통해 상품무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주요 업무는 수출입 물품을 이동을 적정하게하고 밀수 단속 및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이다. 이처럼 관세청과 세관은 관세징수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역할이 꼭 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 관세당국의 협의체인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¹⁾에서는

<표 1-1> 컨테이너 검색기 설치 현황

(2015년 3월 현재)

도입 시기	설치 항구	설치 대수
'02-'05	부산항	4대
'02-'05	인천항	3대
'03	광양항	1대
'03	평택항	1대

출처 : 관세청 내부자료 인용

1) 세계 관세 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기구이다. 현재 전 세계 총 17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세 커뮤니티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wcoomd.org

[그림 1-1] AEO 공인심사 절차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김관세, “원활한 국제물류를 위한 한일제도 비교연구 및 향후 세관의 미래 -한일 AEO 제도를 중심으로 -”, 관세청, 2011.

관세국경관리연수원, 「AEO종합심사통합(Ⅱ)」, 2009.

관세청, 「AEO 가이드북」, 2009.

-----, 「종합인증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1.

-----, 「선진 Supply Chain Security 운영체계 연구·분석」, 2007.

우성구·김재명, “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일본기업의 AEO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7권, 한구무역상무학회, 2010.

2. 외국 문헌

Barry Brandman, "C-TPAT Part II: Strategies for obtaining and keeping C-TPAT certification security brief", DE Velocity, 2006.

다국적 기업의 사후보상 조정에 대한 과세범위 연구(요약)

오늘날 어떤 나라도 국제무역(國際貿易) 없이 자급자족만으로 필요한 재화를 충족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인류는 국가 간 무역을 통해서 국부(Wealth)를 창출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모든 나라에서 무역이 주요한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등을 거래하는 것으로 그 대상인 자본, 상품, 서비스 등의 상거래 행위를 말한다. 그 중 상품을 대상으로 한 무역을 상품무역이나 유형무역으로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상품무역은 형태가 있는 재화를 대상으로 한 거래이기 때문에 외국물품이 국내로 들어오거나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나가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는 상품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조직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관세청(關稅廳)과 세관(稅關)이라는 조직을 통해 상품무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주요 업무는 수출입 물품을 이동을 적정하게하고 밀수 단속 및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이다. 이처럼 관세청과 세관은 관세징수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역할이 꼭 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